

조정중재사례

기상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으로 조정성립

01

A 방송은 갑자기 쌀쌀해진 기상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출근 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촬영하여 보도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초상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신청인 A 방송사는 신청인을 비방하지 않는 통상의 방식으로 거리 풍경을 촬영했고, 공공장소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촬영·보도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정심리 결과, 중재부는 공공장소에서의 공익적 목적의 보도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초상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보도에 신청인의 초상을 반드시 넣어야 할 필연성이나 긴급성 등이 없어 초상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A 방송이 이 사건 접수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한 점과 신청인의 초상 노출 시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 50만원 지급 및 VOD 삭제 등의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했다. 이에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 사용,
정정보도 결정

02

B 방송은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과 관련된 행사 소식을 전하며 타 방송사인 C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의 화면과 함께 '비속어와 인격비하표현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C 방송사는 자료화면으로 언급된 프로그램은 해당 사유로 중징계를 받은 바 없고, 여론조사 관련 규정 위반으로 행정지도만 받았을 뿐이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신청인 B 방송은 이 사건 보도는 행사 소식을 전하기 위한 보도로서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신청인 C 방송사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조정심리 결과, 중재부는 이 사건 보도의 공익성 및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자료화면으로 사용된 해당 프로그램이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은 인정되므로 정정보도는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취지의 조정을 가결하는 결정을 했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해당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얼굴 합성한 사진 무단 사용,
손해배상으로 조정성립

03

D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세쌍둥이인 신청인들의 백일 사진을 친권자의 동의 없이 수차례 방송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비록 세쌍둥이의 사진 중 얼굴 부분은 출연자들의 얼굴로 합성되어 있지만 세쌍둥이 사진은 희소성이 있어 주변에서 신청인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세쌍둥이 사진을 벽에서 떼어내어 바닥에 내팽개치는 장면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신청인 D방송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으나, 해당 사진에는 신청인들의 붉은 색 옷과 다리 및 발의 일부분만이 노출되어 신청인들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신청인들을 식별할 신체적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정심리 결과, 중재부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신체 부분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있지만, 문제가 된 사진은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만으로 당사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측에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권고했고 조정이 성립됐다.

언론중재위원회 공감블로그



『이달의 100자평』 공모

PC나 모바일로 언론중재위원회 공감블로그(<http://pacblog.kr>)에 접속하시면

『**4월호** **사랑**』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의 <4월호 **사랑**> 2월호 발간 이벤트 페이지에서 소감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되는 100자평을 남겨주신 분 중 3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아메리카노 2잔 교환권)을 드립니다.

선정되신 분은 2월 22일(월) 언론중재위원회 공감블로그(<http://pacblog.kr>)를 통해 공지됩니다.